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의무*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3. 2. 9. 선고 2022노462 판결 (‘김용균 사건’ 2심 판결)에 대한 비평-

The Employer’s Obligation to Protect Workers’ Safety

최 정 학**
Choi, Cheong-Hak

목 차

- | | |
|-----------------------|-------------------|
| I. 머리말 | III.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
| II.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의무 | 이 사건에의 영향 |
| | IV. 맺음말 |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발생한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사건에 대하여 최근 제2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따르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대표이사과 태안발전본부장은 모두 무죄이며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의 대표이사도 산안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이고 업무상 과실치사죄만이 인정되었다. 산안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람은 한국발전기술의 태안사업소장 1명뿐이고, 그 밖에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의 기술지원처장과 연소기술부장, 연소기술부 차장, 석탄설비부장, 석탄설비부 차장, 그리고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의 운영실장, 연료운영팀장, 안전관리차장 등 중하위급 관리자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되었다.

제1심과 제2심의 차이는 산안법에 규정된 의무 위반 행위 가운데 일부에 대한 인정 여부 그리고 산안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에 있다. 이 가운데 전자의 문제는 사실 판단과 관련되는 것이므로 이 글에서는 분석하지 않는다. 후자의 문제는 산안법상 안전조치 의무의 주체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전제하는 주의의무의 범위와

<https://doi.org/10.35148/ilsilr.2023..55.185>

투고일: 2023. 7. 28. / 심사완료일: 2023. 8. 21. / 게재확정일: 2023. 8. 23.

* 이 논문은 2022년도 제3분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Professor, Dept. of Law, Korea Nat'l Open University.

관련이 있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것은 기업의 대표이사와 같은 최고위 관리자가 위험한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 대해 갖는 보호의무 또는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의무가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를 산안법과 형법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외에도 양형의 문제가 있다. 2심에서 선고된 자유형의 최장기간은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장에 대한 1년 2개월이고 그 밖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1년, 금고 10개월, 금고 6개월에 지나지 않았으며, 법인인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700만원과 1200만원이 선고되었을 뿐이다. 최소한의 예방 효과마저 의심되는 이러한 낮은 수준의 형벌은 그동안 중대재해에 대해 우리 사법기관이 가져온 인식이 여전히 그대로임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기업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규정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것은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의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규범적 합의가 달라졌다는 것을 뜻하므로, 비록 이 법률은 이 사건의 발생 이후에 제정된 것이지만, 그 취지가 판결에 다소라도 반영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주제어] 김용균, 중대재해, 산업재해, 관리·감독의무, (업무상) 주의의무

“... 죽음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죽음은 무의미한 통계숫자처럼 일상화되어서 아무런 충격이나 반성의 자료가 되지 못하고 이 사회는 본래부터 저러해서, 저러한 것이 이 사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죽음조차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나와 내 자식이 그 자리에서 죽지 않은 행운에 감사할 뿐, 인간은 타인의 고통과 불행에 대한 감수성을 상실해간다. ...”¹⁾

I. 머리말

“깃청이 찢어질 것 같은 굉음 사이로 컨베이어 벨트는 계속 돌아간다. 지금 시각은 밤 11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잘 하지는 못하지만, 선배 직원들에게 들은 대로 컨베이어 벨트 안에 떨어진 낙탄을 깨끗이 제거하고, 특히 턴오버 아이들러²⁾가

1) 노동과세계, 김훈, “빛과 어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부쳐”, 2019. 09. 25,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50537>>, 검색일: 2023. 7. 8.

2) 이 사건 턴오버 아이들러는 3개 또는 6개의 롤러가 원형으로 구성되어 벨트의 윗면과 아랫면을 뒤집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일반 컨베이어 벨트의 운반 및 회귀 아이들러와 모양이나 기능, 물림점의 위치 등이 달라 “다른 아이들러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한다. 신영은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 안전관리차장의 검찰 진술(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3. 2. 9. 선고 2022노462 판결서 23쪽, 각주 3에서 재인용).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주변이 어두워 벨트 안을 보려면 점검구 내부로 머리를 들이밀어야 한다. 그런데 아이들러에 무언가 끼인 모양이다. 소리도 그렇고 무언가 까만 것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별수 없이 혼자서 손으로 털어내야 한다. 위험하기는 하지만 조심하면 별일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늘 이렇게 해 왔으니까.³⁾ 그 순간⁴⁾

그렇게 24세의 젊은 노동자 김용균은 이 세상을 떠나갔다. 비정규직이기는 하지만 이제 비로소 취업을 하게 되었다고 설레었던 순간을 생각하면 너무나 허망한 죽음이다. 어머니는 울부짖었고 세상은 분노했다. 많은 언론들이 앞다퉈 이 사건을 다루었고⁵⁾ 많은 사람들이 이를 계기로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제도가 한 단계 더 진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듯, 2019년에는 산업재해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으로 약칭)이 개정되고(이른바 ‘김용균법’), 2021년에는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포함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약칭)이 제정되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이들 법률은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는 다만 당시의 산안법(2019. 1. 15. 법률 제 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과 형법이 적용될 뿐이다. 그리고 2022년 2월 10일 제1심에 이어 2023년 2월 9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결과는 기대(?) 이상으로 관대한 것이었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대표이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는 물론 산안법 위반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다. 나아가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장에게도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되었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안법 위반 행위에 대해 2심에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 한국서부발전의 임직원은 아무도 산안법 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았고 다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된

3) 이하에서도 살펴보겠지만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의 작업지침서에는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설비 점검시 2인 1조 근무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의 발생 이전까지 한 사람이 단독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한다.

4) 이상은 필자가 사건 상황을 추측하여 묘사해 본 것이다. 물론 객관적인 실재나 피해자의 생각 등은 정확히 알 수 없다.

5) 가장 대표적으로 경향신문 2019. 11. 21. 기획기사를 들 수 있다. 이 기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말까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1천 2백 명의 명단과 사망원인을 담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한 경향신문, “1748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 <http://news.khan.co.kr/kh_storytelling/2019/labordeath/index.html>, 검색일: 2023. 7. 8. 참조.

사람은 태안발전본부의 기술지원처장과 연소기술부장, 연소기술부 차장, 석탄설비부장, 석탄설비부 차장과 같은 중하위급의 관리자들이었다.⁶⁾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1심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안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보았지만, 2심은 업무상 과실치사만을 인정하고 산안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국발전기술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가 인정된 사람은 현장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태안사업소장 1명 뿐이었다. 그 밖에 태안사업소의 운영실장, 연료운영팀장, 안전관리차장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인정되었다.

1심과 2심의 차이는 결국 산안법에 규정된 의무 위반 행위 가운데 일부에 대한 인정 여부 그리고 산안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에 있다. 이 가운데 전자의 문제는 사실 판단 - 즉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그 가동을 중지해야 하는가 - 과 관련되고 또 더 중요해 보이는 다른 의무들 - 아이들러와 같은 위험한 설비에 방호조치가 설치되지 않았고 위험한 작업은 2인 1조로 해야 한다는 것 - 에 대한 위반은 1, 2심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굳이 더 이상 다루지 않으려 한다.

후자의 문제는 산안법상 안전조치 의무의 주체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전제하는 주의의무의 범위와 관련이 있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것은 기업의 대표이사과 같은 최고위 관리자가 위험한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 대해 갖는 보호의무 또는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의무가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된다. 아래 제2장에서 이를 산안법과 형법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외에도 양형의 문제가 있다. 더 넓게 유죄를 인정했던 1심에서도 선고된 자유형의 최장기간은 1년 6개월에 지나지 않았고 그나마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그 집행이 유예되었다. 2심에서는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장에게 징역 1년 2개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기술지원처장과 한국발전기술 대표이사에게 각각 금고 1년, 태안발전본부 연소기술부장과 태안사업소 운영실장, 안전관리차장에게 각각 금고 10개월, 태안발전본부 연소기술부 차장과 석탄설비부장, 석탄설비부 차장에게 각각 금고 6개월이 선고되었다. 물론 모든 자유형은 그 집행이 2년간 유예되었다. 책임에 상응하는 대가는 차치하고라도

6) 이들에 대해서도 2심은 1심의 유죄 판단 가운데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다. 무죄가 된 부분은 위험한 설비(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할 때에는 그 가동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것이었는데, 1심은 위 행위자들의 이의무 위반을 인정한 반면, 2심은 실제 점검은 가동 중에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였다. 앞의 판결서, 57-58쪽.

1심과 2심 판단의 또 하나의 차이는 태안발전본부 석탄설비부 계전과 차장에 대해 1심은 유죄를 인정하였지만 2심은 이를 부인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계전과는 전기 설비 등만을 담당하여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석탄 취급 설비 점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의 판결서, 59쪽 참조.

도대체 법원은 이 정도의 형벌로 최소한의 예방효과라도 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언급한다.⁷⁾

II.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의무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작업으로부터 발생한 위험 등에서 그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가? 형법, 특히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시각에서 보면⁸⁾ 이러한 의무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키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의 하나로 파악된다. 그러나 과실범에서 주의의무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그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입장 - 즉 행위자가 속해있는 사회공동체의 평균적인 제3자 - 과 주관적인 태도 - 즉 구체적 행위자의 지식이나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 의 대립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건간에 주의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할 때, 이미 존재하는 실정법규가 있다면, 이것이 첫 번째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⁹⁾ 다시 이 사건의 상황, 즉 사업주의 노동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생각해 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여러 안전관계법령이 있고 그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주가 갖는 주의의무, 즉 노동자에 대한 보호의무는 일반적

7) 이 밖에 한국서부발전과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었는가 하는 쟁점도 있다. 이것은 한국서부발전의 임직원과 회사 자체가 산안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부담하는가 하는 문제로 연결된다. 1심과 2심은 이를 모두 부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들의 산안법 위반은 처음부터 문제되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한국서부발전의 태안발전본부장에게는 1심에서 산안법에 규정된 ‘위험한 기계의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 의무(구 산안법 제33조 제2항)’ 위반과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 미이행 및 작업중지명령(구 산안법 제26조 제1항, 제51조 제7항)’ 위반이 인정되었다. 그런데 전자는 구 산안법 제33조 제2항이 그 주체를 사업주로 한정하지 않고 ‘누구든지’라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후자는 한국발전기술의 태안사업소장과 공동정범의 관계였음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태안발전본부장을 제외하고는 한국서부발전 자신과 모든 임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만 검토되었을 뿐 산안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다시 살펴본다. 다만 한국서부발전과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가 인정되는가 하는 점은 노동법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므로 이 글의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8) 사업주가 고의로 노동자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때에는 당연히 살인이나 상해죄가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위험한 작업으로 인해 노동자의 안전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이런 고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과실에 의한 경우, 즉 과실치사상의 문제만 남게 된다.

9) 이다 마코토, “일본형법에서의 조직과실과 감독과실”, 청구법학 제32권 제1호, 청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17쪽.

으로 안전관계법규가 정하고 있는 것보다는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바꿔말하면 사업주의 주의의무는 안전법규의 내용을 일차적인, 최소한의 것으로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

따라서 먼저 산안법에 의한 사업주의 의무를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산안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1981. 12. 31. 제정된 법률 제3532호 산안법 제1조). 그러므로 사업주는 당연히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현행 산안법 제5조 제1항 제1호). 사업주의 구체적인 의무는 산안법 제14조 이하에서 매우 다양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1.1 의무의 주체

산안법에 따른 의무의 주체가 언제나 사업주인 것은 아니다. 일정한 범위의 회사의 대표이사인 경우도 있고(제14조) 근로자를 주체로 한 규정도 있으며(제6조, 제40조 등), ‘누구든지’ 의무를 지켜야 하도록 한 조항(제80조 등)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의무 규정은 사업주를 수범자로 하고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이다(산안법 제2조 제4호). 그런데 통상 ‘사업을 하는 자’는 관청에 사업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하고, 이는 대부분 법인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결국 산안법은 법인(사업주)을 의무의 주체로 전제하고 있다는 셈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은 형벌규정과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킨다. 산안법 제166조 이하의 벌칙규정은 특정한 산안법의 조항을 위반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 조항들은 사업주를 의무의 주체로 보고 있으므로, 결국 법인(사업주)이 범죄의 주체와 처벌의 대상이 되게 된다. 하지만 우리 형법학계의 통설과 판례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여기에서 나온 교묘한 해결책이 이른바 ‘양벌규정의 역적용’이다.¹⁰⁾ 본래 양벌규정을 자연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그가 속한 법인이 함께 형사책임을 지도록 한 것으로 보는 해석과는 반대로, 형식적인 법인의 범죄의 처벌 대상을 실질적인 범죄의 주체인 자연인에게로 확장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¹¹⁾ 하지

10)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만 이런 입장은 지나치게 인위적인 것이다. 오히려 산안법의 원칙적 수범자를 법인으로 보고 형벌규정 또한 이들을 행위 주체로 인정하고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단순하고 간명한 해석이다.¹²⁾

여하튼 양벌규정 그리고 이에 대한 판례의 해석으로 분명해지는 것은 (법인)사업주 뿐만 아니라 그 대표이사과 대리인, 종업원 등에게도 산안법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때 이 의무는 여러 수범자들에게 어떻게 분배되어야 할까?

‘의무의 분배’라는 표현은 적당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여러 사람이 중복해서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산안법이 규정한 의무는 일부는 A가, 다른 일부는 B가, 또 다른 일부는 C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¹³⁾ 법인 자신에서부터 대표이사, 중간관리자, 현장책임자, 직접 행위를 한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이 모두 같은 의무를 함께 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의 범위는 사람에 따라, 특히 직급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현장의 행위자나 안전관리자는 그 행위 또는 그 현장에 관한 의무만 부담하면 되지만, 부장이나 차장과 같은 중간관리자는 자기 부서에 해당하는 의무를 다 져야 한다. 또 대표이사나 법인은 그 법인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될 것이다. 굳이 이것을 대비되는 용어로 나누어 표현해 보자면 현장 관리자 등의 ‘개별적·직접적’ 주의의무와 대표이사 등의 ‘일반적 관리·감독’의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 의무는 개별적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므로 전자만 있고 후자는 없는 상황을 상정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대표이사는 위험한 기계·기구를 일반적으로 관리해야 할 뿐 여기에 구체적인 방호조치를 할 직접 의무는 없는가? 물론 대표이사가 모든 안전조치를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각각의 구체적 의무 이행은 기업과 같은 조직의 내부 구조에 따라 정해진 담당자가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고위관리자의 면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간관리자도 자신이 직접

11) 서희종, “행정형벌에서의 양벌규정과 위반행위의 주체”, 사법행정 제33권 제3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992, 96쪽에 의하면 이러한 해석론은 본래 일본의 판례이자 통설이며 이것이 옳고 이를 우리 대법원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12) 산안법 형벌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최정학,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의 처벌규정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제36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341쪽 이하를 참조.

13) 물론 산안법의 규정 가운데에는 의무의 주체를 특정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 그 사람만이 수범자가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일반적으로 산안법은 의무 주체를 ‘사업주’로 표현하고 있고, 이때 사업주에는 법인 자신과 대표이사, 기타 관리자와 노동자가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적 안전조치 미이행의 책임을 지는 것처럼, 최고위관리자는 수행되어야 할 모든 안전보건조치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포괄적이지만 직접적 의무이다. 달리 말해 직접 조치의무는 몰라도 안전보건의 ‘관리·감독’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는 없다. 이것이 산안법이 제2장 제14조 이하에서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만들게 하고, 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한 취지이다.

그러므로 대상 판결이 한국서부발전의 기술지원처장과 연소기술부장 등 중하위 관리자들에겐 아이들리의 물림점에 대해 방호조치의 미이행과 위험한 작업에서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한 업무상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태안발전본부장과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이것이 다만 ‘일반적·추상적’ 의무일 뿐 ‘구체적·직접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를 부인한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일반적·추상적’ 주의의무에 대해서는 결국 의무이행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되는데, 형법의 어떤 과실 개념도 이렇게 내용 없는 의무의 분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오히려 법원이 말하는 ‘일반적·추상적’ 주의의무란 고위관리자의 관리·감독의무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위에서 본 논리에 따라 구체적인 의무이행을 포함하는 것이지 의무가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나아가 한국서부발전과는 달리 한국발전기술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위의 두 가지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의문을 더욱 키운다. 같은 지위의 두 대표이사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일반적·추상적’ 주의의무만 인정되고 - 다른 말로 하면 주의의무가 부정되고 - 다른 어떤 경우에는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것인가?

그런데 이 쟁점은 정확히는 산안법이 아니라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한 것이다. 두 경우가 결국 같은 의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의 비판이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지만 여하튼 판결은 이것을 형법에 따른 업무상 주의의무로 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그러면 두 대표이사의 산안법에 따른 의무 위반은 인정되었는가? 그렇지 않다.¹⁴⁾ 판결은 이를 부인하는 다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살펴본다.

14) 정확하계는 2심에서 두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한국서부발전의 태안발전본부장에게도 산안법 위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결국 산안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고위관리자는 한국발전기술의 태안사업소장 한 사람뿐이다.

1.2 고의범과 과실범

종래 산안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판례는 이를 고의범 또는 최소한 ‘미필적 인식’이 필요한 범죄로 보아 왔다.

위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¹⁵⁾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각 죄가 성립한다.¹⁶⁾

대상 판결도 이에 따라 두 대표이사는 물론 한국서부발전의 태안발전본부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외함의 점검구 개방 등 설비의 구체적 현황”이나 “(현장) 운전원들의 작업방식의 내용이나 위험성을 알면서 고의로 방치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고 있다.¹⁷⁾

그런데 이같은 판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모순을 낳는다. 즉 평소에 현장의 구체적인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재해 결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한 고위관리자는 산안법 위반의 유죄가 인정되는 반면, 반대로 현장의 위험이나 재해 예방에는 별 관심도 없고 따라서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한 사람은 무죄로 판단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원청 (대)기업이 위험한 작업을 외부 하청업체에 맡기고 자신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 구체적인 현장의 위험을 알 수 없었으므로 고의가 부인되기 때문에 -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만연해진 것이다.¹⁸⁾

15)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707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등.

16)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17) 각각 앞의 판결서, 35쪽, 65쪽.

대상 판결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대표이사는 물론 태안발전본부장, 그리고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의 대표이사까지도 고의 내지는 인식의 부재를 이유로 산안법 위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몰랐다’는 사정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면해 주는 것은 과연 온당한 일인가? 정말 몰랐는지, 사실 판단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위의 논리 - 관리·감독의무는 직접적·구체적 의무의 이행에 대한 확인과 점검을 포함하는 것이다 - 에 의하면 이들에게는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의문은 산안법 위반 범죄를 반드시 고의범으로 한정해야 하는가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법률이 위반되어 있는 상태 - 즉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 - 가 있고 이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 대표이사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 즉 중간관리자의 보고 등을 통해 대표이사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 유죄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안법 위반 행위를 과실범으로까지 그 처벌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한다.¹⁹⁾ 대상 판결이 중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²⁰⁾ 대표이사들에게도 산안법의 안전보건의무가 지켜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기업의 규모가 너무 크다거나 가까운 과거에 비슷한 종류의 사고 발생 경험이 없었다거나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일일이 보고받지 못했다’고 해서 부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산안법은 대표이사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같은 법률이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인, 감독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법현실적으로도 산안법 위반 범죄는 형법의 과실치사죄와 과형상 일죄로 처리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양형기준에서도 두 범죄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다.²¹⁾ 이것은 산안법 위반행위를 고의범으로 취급하는 판례의 원칙적 태도와는 달리

18) 이 점을 지적하고 원청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산안법 위반의 유죄를 인정한 최근의 인천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고단1878 판결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 판결도 유죄의 근거로 대표이사에게 산안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고 있다.

19) 이러한 논리로 최정학,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경영자 처벌의 논리-”, 노동법연구 제51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21, 5-14쪽.

20) 앞의 판결서, 39쪽.

21) 양형위원회,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2023. 7. 1. 시행)”,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8/accidental_homicide_01.jsp>, 검색일: 2023. 7. 8. 참조. 그나마 이전에는 산안법 위반 범죄가 아예 과실치사상범죄와 같이 다루어지고 있었으나 2021년 12월 6일 양형기준의 수정으로 두 범죄는 분리되었다.

실제로는 법률가들이 이를 본질적으로는 과실범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고의범 처벌의 원칙’이라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한다. 형법 제13조와 제14조는 고의범만이 처벌되며 과실범은 단지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만 처벌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특히 행정형법에서 과실범에 대해 “해당 (행정)법률의 입법목적이나 제반 관계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과실범 처벌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과실범을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²²⁾이 있기는 하지만, 위 원칙의 규범력을 넘어서기는 힘들 것이다.²³⁾

판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위에서 소개한 ‘미필적 인식’의 요건이 등장한 것이다. 미필적 고의를 포함하여 형법의 모든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미필적 인식이란 본래 인식이 확정되지 않아 고의가 부정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이를 고의범과 마찬가지로 보고 있는 것은, 산안법 위반 행위를 고의범으로 한정하는 자신의 태도가 너무 제한적이고 따라서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결국 산안법 위반에 대해 분명한 고의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태도이다. 어떤 식으로든 처벌범위가 더 넓어져야 하는 것이다.

2. 형법의 업무상 주의의무

산업재해, 특히 중대산업재해²⁴⁾ 가운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면 산안법 위반과는 별도로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문제될 수 있고, 그 성립을 위해서는 행위자의 과실 행위, 즉 주의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때 주의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오늘날의 통설적 입장은 (결과에 대한) 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가 주의의무를 구성하며, 그 판단기준은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라고 본다.²⁵⁾

황일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양형상 한계(유죄판결의 분석)”, 권창영 외, 중대재해처벌법 연구 I, 법문사, 2022, 115쪽.

22) 이를 입법취지설이라고 한다. 신동운, “행정형법과 과실범의 처벌”, 서울대학교 법학 제52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134쪽. 또 이를 따른 판례로 대법원 1993. 9. 10. 선고 92도1136 판결이 있다.

23) 신동운, 위의 논문, 135쪽 이하.

2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요건은 이 법 제2조 제2호와 제3호에 규정되어 있다.

25) 이재상/장영민/강동변, 형법총론, 박영사, 2017, 193-195쪽. 이에 대해 개별적인 행위자의 지식이나 능력과

그런데 이런 형법의 주의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행위와 관련된 다른 법령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행위자의 특수한 의무를 규정한 다른 법규가 있다면 이를 준수했는지가 1차적인 판단기준이 된다는 뜻이다.²⁶⁾ 재해로 인한 사망의 결과와 과실치사죄의 성립 여부도 마찬가지이다. 즉 형법에 의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산안법의 의무 준수 여부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지만, 후자는 전자를 결정하기 위한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 된다.

대상 판결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한 판단을 산안법 위반 범죄와는 별도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두 가지의 내용은 중복된다. 다만 2심은 1심에 비해 한 가지 행위에 대해서 산안법 위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 컨베이어 벨트의 점검은 벨트의 가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해야 한다는 것 - 모든 피고인에 대해 이 주의의무 위반 또한 부정되었다. 또 한 가지, 2심은 1심과 달리 한국서부발전의 태안발전본부장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립을 부인하였다.

먼저 산안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업무상 과실치사죄에서의 주의의무 사이의 관계는, 위에서 본대로, 후자가 전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달리 말하면 산안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된 경우는 모두 업무상 주의의무도 지키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반드시 산안법 의무의 미이행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²⁷⁾ 대상 판결도 이러한 관점을 따르고 있다. 그 결과 한국발전기술의 대표이사에게는 산안법 위반이 부인되었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립은 긍정되었던 것이다.

같은 주관적 요소를 주의의무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는 이용식, “과실범이론의 변화에 관하여 -과실의 개념내용-”, 서울대학교 법학 제44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253쪽; 김성돈, “과실개념에서 주의의무위반성과 예견가능성”, 형사정책연구 제6권 제4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995, 174-180쪽.

- 26) 비슷한 취지로 이다 마코토, “일본형법에서의 조직과실과 감독과실”, 17쪽. 물론 다른 법령을 모두 준수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도로교통법상의 속도제한을 지키지 않은 차가 사고를 낸 경우 그 운전자가 반드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는 할 수 없고, 반대로 속도를 지킨 차가 사고를 낸 때에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결국 과실치사죄에서 요구하는 주의의무는 구체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매우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27) 이 명제는 위 각주 26의 논리 - 주의의무와 여타 관계법령의 위반은 서로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 - 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안법과 과실치사죄의 관계는 다른 과실치사의 경우와는 좀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도로교통법의 속도제한은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과 직접 인과관계가 없을 수 있지만 - 즉 운전부주의와 같은 다른 과실행위로 사고가 난 것이 입증된 경우 - 산안법 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음에도 다른 이유로 재해 노동자의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최정학, “중대재해처벌법-기업 경영자 처벌의 논리-”, 14쪽은 이를 “일반적 주의의무가 아니라 특정한 의무 위반이 범죄행위인 때에는 여기에 이미 일정한 법의 침해에 대한 전형적인 위험이 결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구성요건 자체에 처음부터 높은 정도의 예견가능성이 전제되어 있다”고 표현한다.

물론 이 글은 한국발전기술의 대표이사와 함께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대표이사와 태안발전본부장에게도 산안법 위반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이미 설명하였지만, 산안법의 의무 주체에는 현장의 중하위관리자뿐만 아니라 (최)고위감독자도 포함되며, 설령 이들이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직접 이행 의무가 아니라 관리·감독 의무만 지고 있다고 보더라도 이것은 직접 의무의 이행에 대한 확인·점검 및 개선조치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 세 사람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립은 당연히 긍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대상 판결은 이들에 대해 모두 산안법 위반 범죄를 부인하면서 그 이유로 범죄 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과실범’이다. 따라서 이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고의의 부인 이외에 다른 근거가 필요하다. 대상 판결은 대표이사 등에게는 노동자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일반적·추상적’ 주의의무만 있을 뿐, 어떤 조치를 해야 할 ‘구체적·직접적’ 의무는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인위적인 개념의 조작 - 주의의무를 ‘일반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으로 나누는 - 을 통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과실범에서의 주의의무에 일반적 의무와 구체적 의무의 구별은 없다. 더구나 일반적 의무는 있지만 구체적 의무는 없으므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일반적 의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차라리 솔직하게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더구나 대상 판결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대표이사와 태안발전본부장에게는 ‘직접적·구체적’ 의무를 부인하면서도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의 대표이사에게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판결은 세 사람, 더 정확하게는 두 기업의 차이를 그 규모와 최근에 비슷한 종류의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가 하는 점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종래 산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우리 법원의 태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 온 것임을 판결은 알지 못하고 있다.

대상 판결의 논리를 따르면 기업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산안법 위반과 노동자의 사망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은 약해진다. 현장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이고 판결의 용어에 따르면 노동자를 보호할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고 예견할 수도 없었다는 것을 뜻하므로, 결국 두 가지 근거는 하나로 압축된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는 ‘할 일이 너무 많고,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으므로’ 현장의 안전 따위는 알 수 없고, 이것은 다만

다른 하위 직원에게 맡겨 놓으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논리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산안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사실상 무력화하고,²⁸⁾ 이에 따라 중대재해의 발생을 되풀이하게 만든 주요 원인 중 하나였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특히 규모가 큰 대기업의 대표이사는 산안법 따위에는 신경 쓸 필요도 없다. 더욱이 외부 기업과 도급계약을 맺어 ‘위험을 외주화’하면 산안법을 포함하여 노동자의 재해에 대해 책임을 질 가능성은 더욱 적어진다. ‘현장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 비슷한 종류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충분한 변명의 근거는 되지 못한다. 제1심 판결에 의하면 한국서부발전에서도 2004년²⁹⁾과 2007년, 2017년³⁰⁾에 노동자의 협착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했을뿐더러, 전력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한국서부발전이 여타 여러 발전소에서 반복되는 종류의 재해를 전혀 몰랐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해 방호조치를 하고 위험한 작업은 2인이 1조가 되어 일하라는 것은 산안법과 그 하위 법령에 의해 강제되는 의무사항이다. 이전에 같은 종류의 재해가 발생하였는가의 여부는 단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가중하기 위한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산안법 위반,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요건은 아니다.

III.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이 사건에의 영향

1.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

1.1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렇게 지나치게 약한 기업 고위관리자 - 중대재해처벌법의 용어로 하면 ‘경영책임

28) 김성룡 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 분석 연구, 고용노동부, 2018, 157-159쪽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산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제1심 법원 선고 형벌의 평균 징역 기간은 10.9개월, 평균 금고 기간은 9.9개월이고, 벌금형은 자연인의 경우 평균 약 421만원(4,206,600원), 법인의 경우 약 448만원이었다고 한다.

29) 당시 근로자의 단독작업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2인 1조 작업 의무화 조치가 처음 시행되었다고 한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 2. 10. 선고 2020고단809 판결, 48쪽.

30) 그러나 제2심 판결은 이것이 이 사건과 비슷한 종류의 재해임을 부인한다. 앞의 제2심 판결서, 62쪽.

자’ - 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³¹⁾ 그리하여 이 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는 등의, 산안법과는 다소 구별되는,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설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경영책임자와 기업 자신을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른바 법인 처벌의 ‘독립모델’을 수용하여 경영책임자는 중하위관리자의 형사책임과 관계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점이다.³²⁾ 그러므로 이 법에 규정된 경영자의 의무는 산안법의 그것과는 다른 경영책임자만의 것이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경영책임자의 의무로 크게 4가지를 정하고 있다(제4조, 제10조). 그리고 이 가운데 2가지에 대해서는 다시 시행령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이하).³³⁾ 이 법은 이를 ‘안전보건확보의무’라고 지칭하여 산안법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구별하고 있지만, 종래의 어법대로 하면 이것은 아마도 경영자의 안전문제에 대한 ‘관리·감독의무’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 의무는 구체적 조치의무에 비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을 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충분히 특정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비판도 있지만,³⁴⁾ 경영자의 관리·감독의무는 지금 정도의 일반성과 포괄성을 한계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³⁵⁾

1.2 이 사건에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제정되고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바로 이 ‘김용균’의 사건이 이 법의 제정에 결정적인 추동력을

31) 더 정확하게는 경영자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에 대한 처벌의 강화를 위한 것이다. 경영책임자가 속한 법인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높였을 뿐만 아니라(제7조, 제11조), 제정 과정을 살펴보면 이 법은 본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처벌법으로 출발한 것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32)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최정학,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안(노회찬 의원안)에 대한 몇 가지 제언”, 민주법학 제73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286-293쪽 참조.

33)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안한열, “안전보건확보의무”, 권창영 외, 앞의 책, 455-484쪽.

34) 대표적으로 송지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검토”, 형사법의 신통향 제74호, 대검찰청, 2022, 235-242쪽.

35) 나아가 이 법률의 처벌조항을 과실범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의무 규정은 단지 예시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시도로는 최정학,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경영자 처벌의 논리-”, 5-14쪽을 참조.

제공하였고 대상 판결은 이 법 시행이 1년여 지난 후에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위에서 본 법의 취지가 다소나마 반영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특히 업무상의 주의의무에 대해서는, 산안법에서의 그것과는 달리, 법규로 특정된 것 이외에도 일반적인 사회적 규범이나 합의 등을 광범위하게 고려할 수 있다.³⁶⁾ 그러므로 비록 사건 발생 이후에 제정된 것이지만, 경영자의 노동자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에 관해 달라진 규범적 판단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이 사건에서도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여하튼 이제 분명한 것은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을 대상 판결과 같이 볼 수는 없다는 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한 몇 가지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들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은 다른 중하위관리자가 아니라 그들만의 고유한 의무이며, ‘관리체계’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산안법의 그것과는 다른 구조적인 것이다.

이런 기준을 적용했다면 이 사건에서 두 대표이사, 그리고 태안발전본부장에게는 어떤 판단이 내려졌을까? 물론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야 하겠지만, 실제 위험한 물림점에 방호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2인 1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를 점검·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실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이 자신의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2. 양형의 문제

끝으로 양형의 문제를 간단히 언급하려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제10조 제1항). 특히 자유형에 대해서 하한만이 규정된 것에 대해서 과잉처벌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³⁷⁾ 이것은 종래 산안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벼워 어떻게든 최소한의 형벌을 강제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36) Ida Makoto, “Inhalt und Funktion der Norm beim fahrlässigen Erfolgsdelikt”, *Festschrift für HANS JOACHIM HIRSCH zum 70. Geburtstag am 11. April 1999*, De Gruyter, 1999, pp. 238-239.

37) 자세한 내용은 송지용, 앞의 논문, 249-259쪽.

대상 판결도 이러한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유죄가 인정된 경우에도 가장 장기의 형벌은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장에게 선고된 징역 1년 2월이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금고 1년, 금고 10월, 금고 6월에 지나지 않았다. 더욱이 이 모든 자유형은 그 집행이 2년간 유예되었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게 부과된 벌금형도 한국서부발전 700만원, 한국발전기술 1200만원에 불과하다.

이 사건이 미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턱없이 모자라며 나아가 과연 최소한의 예방 효과라도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불러 일으키는 이런 과소 형벌은 이 판결에 적용된 구 산안법 제66조의2³⁸⁾ - 현행 산안법 제167조 제1항 - 가 사실상 규범력을 상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정형으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지만 실제 선고되는 형벌은 대부분 1년여의 자유형과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법현실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반드시 자유형의 하한이 규정되어 법원으로 하여금 지나치게 가벼운 형벌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입법론의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 법 위반으로 선고된 판결은 모두 세 건인데, 그 결과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두 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이 한 건이다. 종래 산안법 위반에 대한 것과 거의 같은 이 정도의 양형은, 대상 판결이 보여주듯이, 법원이 여전히 ‘피고인들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는 볼 수 없’³⁹⁾다는 인식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드러낸다.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동자의 사망을 중대재해로 보고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인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통해서라도 이를 줄여보자는 사회적 합의 그리고 이에 따른 법제도의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우리의 사법현실은 사실상 이전 그대로인 셈이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김용균 사건’의 2심 판결에 대해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해 보았다. 요컨

38) 구 산안법(2019 개정 이전의 것) 제66조의2(벌칙)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9) 앞의 제2심 판결서, 102쪽.

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대표이사과 태안발전본부장 그리고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의 대표이사 등 최고위 관리자에 대해서도 산안법상의 (관리·감독)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형법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죄도 당연히 유죄로 판단되게 될 것이다. 이들은 모두 노동자의 안전을 지켜야 할 법률상의 보호의무, 즉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규모가 너무 크거나 최근에 비슷한 종류의 재해가 없었다는 사정은 충분한 변명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산안법은 규모가 너무 작은 기업들에 대해서 법의 적용 제외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 재해 경험이 있느냐 하는 것은 책임을 가중하는 사유일 뿐 법적으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면해 주는 이유는 될 수 없다. 더구나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은 모두 석탄 화력 발전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장기간에 걸쳐 여러 재해가 일어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위 대표이사들이 컨베이어 벨트나 아이들러와 같은 기구들이 갖는 높은 위험이나 운전원들의 단독작업 방식의 문제점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렇게 위험한 노동현실은 쉽게 개선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 실제로 사건 이후 방호조치가 이루어지고 2인 1조 작업이 시행되었다 - 이들은, 안전보건문제에 관한 최고위 결정권자로서, 이러한 현실을 알았어야 할 의무가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러한 상황은 비단 이 사건에 대해서만 그런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 산안법이 대부분 이와 비슷하게 고위관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도 않고, 다만 중하위관리자들에 대해서, 그것도 매우 가벼운 정도의 형벌만이 선고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 등의 고유한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들을 엄격하게 처벌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런데 법 제정 이후에도 현실은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 자체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을뿐더러⁴⁰⁾ 그나마 기소된 소수의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은 예전과 비슷한 단기 형과 이에 대한 집행유예만을 선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균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도록 한 가장 중요한 사회적 배경 가운데 하나이다. 바라건대 앞으로 제3심에서 대법원은 이같은 이 사건의 상징적 의미를 감안하

40) 법 제정 이후 1년간 수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정환,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집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과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1년의 평가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과제: 중대재해전문가넷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중대재해전문가넷, 2023, 39-47쪽.

여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과 그 경영책임자에게 -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 정당한 (형)법적 책임을 부과하자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합의를 진지하게 고려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재해에 대한 법률가와 기업가들의 인식과 행동이 바뀌어야만 실제 노동현장에서 의 안전보건조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믿는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안한열, “안전보건확보의무”, 권창영 외, 중대재해처벌법 연구 I, 법문사, 2022.
- 황일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양형상 한계(유죄판결의 분석)”, 권창영 외, 중대재해처벌법 연구 I, 법문사, 2022.

2. 학술지

- 김성돈, “과실개념에서 주의의무위반성과 예견가능성”, 형사정책연구 제6권 제4호,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1995, 151-182쪽.
- 서희종, “행정형벌에서의 양벌규정과 위반행위의 주체”, 사법행정 제33권 제3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992, 94-97쪽.
- 송지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제74호, 대검찰청, 2022, 231-267쪽.
- 신동운, “행정형법과 과실범의 처벌”, 서울대학교 법학 제52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129-145쪽.
- 이다 마코토, “일본형법에서의 조직과실과 감독과실”, 청주법학 제32권 제1호,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1-19쪽.
- 이용식, “과실범이론의 변화에 관하여 -과실의 개념내용-”, 서울대학교 법학 제44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227-256쪽.
- 최정학,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경영자 처벌의 논리-”, 노동법연구 제51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21, 1-38쪽.
- _____,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안(노회찬 의원안)에 대한 몇 가지 제언”, 민주법학 제73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283-311쪽.
- _____,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의 처벌규정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제36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331-354쪽.
- Ida Makoto, “Inhalt und Funktion der Norm beim fahrlässigen Erfolgsdelikt”, *Festschrift für HANS JOACHIM HIRSCH zum 70.Geburtstag am 11.April 1999*, De Gruyter, 1999, pp. 225-240.

3. 세미나자료집

최정학,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집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과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1년의 평가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과제: 중대재해전문가넷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중대재해전문가넷, 2023, 39-47쪽.

4. 신문기사

노동과세계, 김훈, “빛과 어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부쳐”, 2019. 09. 25, <<https://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50537>>, 검색일: 2023. 7. 8.

5. 보고서

김성룡 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 분석 연구, 고용노동부, 2018.

[Abstract]

The Employer's Obligation to Protect Workers' Safety

Choi, Cheong-Hak*

Recently, the second trial ruling was sentenced on the death of "Kim Yong-kyun" worker at the Taean Power Headquarters of Korea Western Power in December 2018. According to the verdict, both the CEO of the main contractor, Korea Western Power Co. and the head of the Taean Power Headquarters were innocent, and the CEO of the subcontractor, Korea Development Technology Co. was also acquitted of violations of the Industrial Safety Act but just guilty of death by occupational negligence. Only one person, the Manager of Taean Office of Korea Development Technology Co. was found guilty of both industrial safety violations and occupational negligence. Intermediate and lower-level managers such as the technical support manager, combustion technology manager, coal facility manager, and safety manager were admitted just guilty of death by occupational negligence.

The difference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trials is whether some of the violations of obligations stipulated in the Industrial Safety Act are recognized, and the scope of those who fall under the violation of the Industrial Safety Act and occupational negligence. Among them, the former problem is related to factual judgment, so it is not analyzed in this article. The latter problem is related to the subject of the obligation to take safety measures under the Industrial Safety Act and the scope of the duty of care presupposed by the crime of occupational negligence.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this case, this becomes a question of how far the duty of protection or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highest manager, such as the CEO of a company, for worker's safety and health issues has to be admitted. Therefore, it is examined in view of the Industrial Safety Act at first and then the Criminal Law.

In addition, there is a problem of sentencing. The longest free sentence sentenced in the second trial was only 1 year and 2 months for the Taean office of Korea Development Technology Co., and the other defendants were just 1 year, 10 months, and 6 months,

* Professor, Dept. of Law, Korea Nat'l Open University.

respectively. This considerably low level of punishment, which is suspected of even the minimum preventive effect, shows that the perception that our judicial institution has taken about serious accidents of workers remains the same as before.

However, in the wake of this case,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hich stipulates the obligation of corporate executive officers to secure worker's safety and health, was enacted. This means that the normative agreement of our society on the employer's duty to protect workers has changed, so although this law was enacted after the occurrence of this case, it leaves a regret that the purpose of the law would be somewhat reflected in the judgment.

[Key Words] 'Kim Yong-kyun', Serious Accident, Industrial Accident, Employer's Duty to Protect Workers, Worker's Safety and Health